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따라야 하므로 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은 시공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매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일곱째, 안 제31조의3 규정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12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와 신설되는 공원녹지 등의 설치비용을 구청장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시장과 사전 협의한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는데 이 경우 법령상에는 보조금액을 기초조사비 및 공공시설 사업비의 각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은 공공시설로 설치토록 명문화되어 있음에 따라 동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주택재개발 조합의 영세성과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한다면 시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한 도로 등에 대한 보조범위를 넓혀 수혜범위를 확대시키되 보조율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주택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7조에는 공공시설설치비용보조에관한개정규정은 사업시행 고시가 되지 아니한 구역중 별표의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재개발구역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 봉천 제7-2 재개발구역 조합원이 지역의 특수성과 재정연건의 열악성을 들어 건축심의회 통과된 상황에서의 용적률 하향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의견요지

○ 본 안건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사업인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양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첫째, 재개발구역내 시유지를 재개발조합 및 점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으로 추정1-3구역 등 4개 구역의 20필지이고 면적은 8,319㎡인데 금액으로는 5,041,160천원이고 둘째, 재개발구역내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는 재산으로 홍제14구역 등 239필지이고 면적은 12,007㎡인데 금액으로는 4,640,803천원이 계상되어 있음.

○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계획인 동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매각관련 규정과 공유재산의 무상양도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IMF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65
----------	----

제출년월일: '98.9.

제 출 자: 서울특별시

1.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 계산

- 처분 : 시유지 매 각 4개구역 20필지
8,319㎡ 5,041,160천원
- 시유지 무상양도 3개구역 239필지
12,007㎡ 4,640,803천원